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47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배준영
서일준 · 김대식 · 추경호
김재섭 · 김형동 · 김미애
고동진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

사 및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u>대발생 곤충</u> ”이란 기후 또 <u>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u> <u>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u> <u>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u> <u>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u> <u>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u> <u>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u> <u>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u>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 ① <u>환경부장관은 대</u> <u>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u> <u>해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곤충</u> <u>을 방제 · 관리 대상으로 지정</u> <u>할 수 있다.</u> ② <u>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u> <u>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u> <u>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u> <u>수 있다.</u> 1. <u>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u> <u>구축</u>

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
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방제·관리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화학적이고 친
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